



<p style="text-align: center;">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2024. 8. 7. 타 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 10. 31, 일부개정]</p>
<p>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특허출원인이 착오 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b>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 자의 기재</b>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b>발명자의 기재</b>를 일부 누락하 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b>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b>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 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 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p>
<p>②<b>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b> 제1항에 따라 발 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 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 · 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b>특허출원인</b>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 다.</p>
<p>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9호서식 의 보정서</p>	<p>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 통</p>
<p>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lt;단서 신설&gt;</p>	<p>2. 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 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발명 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특별하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 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③<b>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b> 제2항 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p>	<p>③ <b>특허권자</b>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 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 통</p>

	<p>2.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li> <li>2.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li> <li>3. 특허권자가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li> </ol>
<p>제33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38조(심사의 순위) ① (생략)</p>	<p>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6조(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 및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76조(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 및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팩스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팩스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 ⑥ (생략)</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와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제101조(절차의 보정) ① (생략)</p>	<p>제101조(절차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보정서 3통</p>	<p>1. 보정서 1통</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①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0.3(b)(ii) 및 20.5(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i), 20.5(b) 또는 20.5(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①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0.3(b)(ii), 20.5(d) 또는 20.5bis(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i),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 10. 31., 일부개정]

### 【제정·개정 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발명자의 추가·정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발명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정보 기재 시 ‘국적’ 및 ‘거주국’을 기재하도록 하고,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따라 출원정보 변경신고 대상에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해당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발명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권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 2.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1.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 2.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 3. 특허권자가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를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모사전송장치"를 각각 "팩스"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인은 그"를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로, "때와"를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제114조의2제1항 중 "조약규칙 20.3(b)(ii) 및 20.5(d)"를 "조약규칙 20.3(b)(ii), 20.5(d) 또는 20.5bis(d)"로, "조약규칙 20.3(b)(i), 20.5(b) 또는 20.5(c)"를 "조약규칙 20.3(b)(i),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조약규칙 20.5(c)"를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제출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인】

【제출인 구분】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국적】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

【전자우편주소】

【제출인 인감(서명)】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그 밖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공보에 제출인의 주소가 일부(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같은 호 나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적】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이 경우 제출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국적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라목(중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민등록번호】

제출인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국내 자연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인이 외국 자연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갖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추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제출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립·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바목(중전의 마목)1)부터3)까지 외의 부분 중 “【우편번호】 및 【주소】”를 “【우편번호】, 【주소】 및 【거주국】”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예] 외의 부분 중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를 “주소) 및 거주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이 경우 거주국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로, “적고”를 “적고(국가명 포함)”로, “영문으로도 적습니다.”를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란에는 【주소】란에 적은 국가명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로 하며, 같은 1)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바목(중전의 마목)2)의 [예] 외의 부분 중 “다음 예와 같이 【주소】란”을 “다음 예와 같이 【거주국】란”으로 하고, 같은 2)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바목(중전의 마목)3)을 삭제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5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1)의 [예] 중 “역삼동 545번지”를 “테헤란로 131”로, “신림동 1542-1번지”를 “신림로15길 40”으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7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가목(4)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10호나목(1)·(2) 외의 부분 중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를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로 한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국적】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거주국】 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4호가목1)의 [예] 외의 부분 중 "우선권증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우선권증명"으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신청한 경우 신청에 따라 부여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는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1)·(2) 외의 부분 중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를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8호가목(1) 중 "한정하며,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를 "한정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나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신청이유】 발명자(고안자)의 정정, 추가

【정정(추가)내용】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651231-1234123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2호 중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4호가목의 [예] 중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를 "[주소] OO시 OO구 OO로 OO"로, "[주소의 외국어표기] OOBeonJi OOHo OODong OOGu OO(Si)"를 "[주소의 외국어표기] OO, OORo, OOGu, OOSi"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가목(2)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번호】**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 중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예] 외의 부분 중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하며, 같은 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신고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번호】**

**【연임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다목 중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6호다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PCT**

**POWER OF ATTORNEY**  
*(for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Rule 90.4)

---

The undersigned applicant(s) *(Names should be indicated as they appear in the Request Form (PCT/RO/101))*:

hereby appoints(appoint) the following person as :       agent       common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o represent the undersigned before       all 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ies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only

the Authority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only: \_\_\_\_\_  
*(please indicate the Authority(ies)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only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dentified below:

**Title of the invention:**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if already available):**

filed with the following Office \_\_\_\_\_ as receiving  
Office and to make or receive payments on behalf of the undersigned.

**Signature of the applicant(s)** *(where there are several applicants, each of them must sign; next to each signature, indicate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and the capacity in which the person signs, if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e request or this power):*

Date : \_\_\_\_\_

Form PCT/Model of power of attorney(for a given international application)(January 2009)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다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PCT**

**GENERAL POWER OF ATTORNEY**  
*(for several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Rule 90.5)

---

The undersigned person(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hereby appoint(s) the following person as:       agent       common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o represent the undersigned before       all 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ies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only

the Authority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only: \_\_\_\_\_  
*(please indicate the Authority(ies)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only



in connection with any and all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by the undersigned with the following  
Office: \_\_\_\_\_ as receiving  
Office and to make or receive payments on behalf of the undersigned.

**Signature(s)** *(where there are several persons, each of them must sign; next to each signature, indicate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and the capacity in which the person signs, if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is power):*

Date : \_\_\_\_\_

Form PCT/model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for several international applications)(January 2009)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9호가목(2)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중 "【국제특허출원언어】"를 "【국제출원언어】"로, "【발명(고안)자】"를 "【발명자(고안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중 "국제특허출원"을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실용신안법」 제41조"를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1조"로 하며,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5호 중 "【국제특허출원언어】란"을 "【국제출원언어】란"으로, "명세서"를 각각 "발명(고안)의 설명"으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6호 중 "명세서"를 "발명(고안)의 설명"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명(고안)자】란"을 "【발명자(고안자)】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국적】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거주국】 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미생물기탁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기탁】 , 【기탁기관명】 ,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22. 1. 1.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라목(1) 중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및 【서열개수】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2호가목(1) 중 "발명"을 "발명(고안)"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중 “국제특허출원”을 “국제출원(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고,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명(고안)자】란”을 “【발명자(고안자)】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 (1) 중 “명세서·청구의 범위”를 “발명(고안)의 설명·청구범위”로 한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국적】 , ( 【주민등록번호】 ) , 【우편번호】 , 【주소】 , 【거주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발명자의 추가·삭제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PCT 용도

(앞쪽)

**【국제출원번호】**

- 【신고구분】**  출원인 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정보변경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대리인 정보변경
- 대표자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번호】**

**【변경내용】**

( **【변경항목】** )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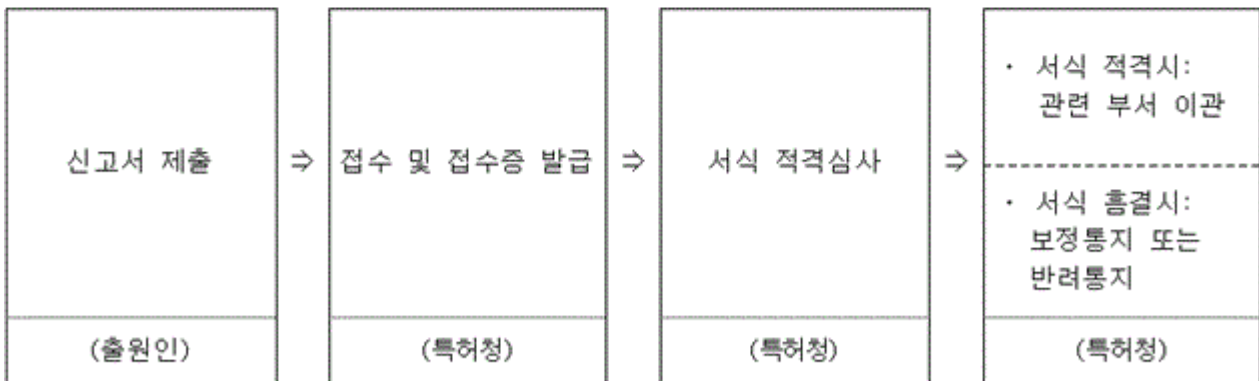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1. 신고구분 및 관련 규정

신고구분	내 용	관련 규정
출원인 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거나,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출원인과 발명자(고안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출원인 정보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대리인 정보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이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이거나, 발명자(고안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출원인과 발명자(고안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 PCT/KR2007/123456

2. 【신고구분】란

신고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출원인】란

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4.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5. 【변경내용】란

가. 출원인,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항목】란은 적지 않습니다.

(2) 【변경전】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을 적고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만들어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

(3) 【변경후】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특허고객번호】)(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국적】, 【거주국】 및 【지정국】란을 각각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변경 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적】 및 【거주국】란은 적지 않습니다.

[예] 【변경후】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특허고객번호】)

【국적】

【거주국】

**【지정국】**

나. 출원인,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대표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

(1) **【변경항목】** 란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서명(인감) 중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①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항목】** 란에 성명(명칭), 주소, 국적, 서명(인감)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정보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항목】** 란에 성명(명칭), 주소, 서명(인감)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③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항목】** 란에 성명, 주소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출원인,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정보 중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는 거주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항을 **【변경항목】** 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2) **【변경전】** 란과 **【변경후】** 란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변경항목】** 란에 성명(명칭)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 예1과 같이 적습니다. **【변경항목】** 란에 성명(명칭) 이외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변경항목】** 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란을 추가하여 다음 예2와 같이 적습니다.

[예1] **【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예2] **【변경항목】** 주소  
**【성명(명칭)】** HONG, Kildong  
**【변경전】** 100, Cheongsa-ro,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변경후】** 200, Cheongsa-ro,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3) 2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변경내용】** 란을 추가하여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 **【변경내용】**  
**【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변경내용】**  
**【변경항목】** 주소  
**【성명(명칭)】** HONG, Kildong  
**【변경전】** 123, Dunsan-dong,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변경후】** 150, Dunsan-dong,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4)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변경항목】**란 및 **【성명(명칭)]**란을 적되 **【변경전】**란과 **【변경후】**란을 삭제하고 변경하려는 서명 또는 인감이미지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예] **【변경항목】** 서명(인감)

**【성명(명칭)]** HONG, Kildong

(5) 대리인 관련 사항 및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발명자(고안자)] 관련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국제출원의 언어가 국어 또는 일어인 경우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한 국문 또는 일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6.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2)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대표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4호 참조)

나.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증여·상속 등에 의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증여·상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법인은 분할·합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 양도증. 이 경우 양도증은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양도일자】**

<p><b>【양도인】</b></p> <p><b>【성명】</b> (인)</p> <p><b>【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b></p> <p><b>【주소】</b></p> <p><b>【양수인】</b></p> <p><b>【성명】</b> (인)</p> <p><b>【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b></p> <p><b>【주소】</b></p>
---

다. 【첨부서류】 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호번호: 000-0000000]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